

## 용역비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광주지방법원
사건번호	2017가단○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용역비
원 고	◇◇◇◇◇◇◇◇ 주식회사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화해권고결정	2018. 7. 16.	비 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고는 공공분야 시스템통합 및 유지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2017년 ○○○○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</li> <li>- 원고는 용역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가 요구하는 협약서는 계약내역서에 없던 부분으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주장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용역대금 및 피고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한 계약보증금의 손해배상금 채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</li> </ul>		
결정사항	<p>가. 피고는 원고에게 금45,276,940원을 2018.9.15.까지 지급한다.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나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</p> <p>다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</p>		
청구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고는 원고에게 89,801,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</li> </ul>		
참조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은 한시적인 계약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인 점, 원고가 종전 계약기간 만료일이었던 2017.2.28. 기준 발생한 장애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본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, 2017.2.28. 기준 이 사건 계약대금은 52,181,970원 가량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계약보증서의 보증금액은 6,905,030원이므로, 위 계약보증금으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화해할 것을 권고한다.</li> </ul>		